

[별 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종류 및 직무 분류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배관		배관	배관
				*지게차	지게차운전
				*굴삭기	굴착기운전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더	로더운전
				*롤러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운전
				*블도저	블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	*쇄석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기계가공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연삭
			일반기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기계분야)	*정밀측정(기계분야)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금형				금형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전기· 전자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자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기응용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도화		*도화	도화
	상하수도				
				*석공	석공
	수자원개발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질및지반				
			응용지질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측량
				공간정보융합	공간정보융합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공사진		*항공사진	항공사진
	항만및해안				
					거푸집
				방수	방수
				<삭제>	석공예
				*포장	*포장
	수질관리(상하수 도분야 업무 수행)		수질환경(상하수 도분야 업무 수행)	수질환경(상하수 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시 인정)	시 인정)	
건축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비계
				*석공	석공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온수온돌
				*유리시공	유리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철근
					타일
				*창호제작(금속재)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목재창호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건축사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광업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굴착	
				*지하수	
도시·교통	교통		교통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원예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 보호	식물 보호	*식물 보호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안전 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안전				
	화공안전				
			방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측로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산업안전지도사					
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환경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잠수		잠수	잠수
건설 지원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화공		화공	*화공	
			화학분석		화학분석
	섬유		섬유	섬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비 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비파괴시험기능장	1978.01.01
기중기산업기사, 굴삭기산업기사, 불도저산업기사, 롤러산업기사, 모터크레이더산업기사, 로더산업기사, 지게차산업기사, 공기압축기산업기사, 쇄석기산업기사, 준설선산업기사, 아스팔트피니셔산업기사	1984.01.01
목공예기능장, 기계제도산업기사, 항공사진산업기사, 지도제작산업기사, 온수온돌산업기사, 정밀측정기사(기계분야), 정밀측정산업기사(기계분야), 정보처리기능장	1991.10.31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토목제도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석공산업기사, 유리시공산업기사, 비계산업기사, 도배산업기사, 건축도장산업기사, 철근산업기사,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제), 기계가공기능사, 금속도장기능장, 금속도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사(방사선투과·초음파탐상·자기탐상·침투탐상·와전류탐상·자기, 침투탐상·누설탐상), 도화기능장, 지도제작기능장, 지적기능장, 측량기능장, 항공사진기능장, 지도제작산업기사, 항공사진산업기사	1992.03.01
비파괴시험기능사	1996.01.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포장기능사, 지하수산업기사, 목공예산업기사, 식물보호기능사, 정밀측정기사, 목재창호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2005.01.01

굴착산업기사	2009.01.0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쇠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능장	2010.12.13

2.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다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다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하는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는 온수온돌로 구분한다.
3.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전문분야 인정(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한다.